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김부겸 (국가보훈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상군경 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대상 및 상이등급별로 각각 5퍼센트 인상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해부상군경 또는 그 유족, 재해사망군경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연동하여 인상하고, 보상금 인상에 따라 중상이자에게 지급하는 중상이부가수당도 연동하여 인상하며, 간호수당의 월지급액을 지급대상별로 각각 5퍼센트 인상하는 등 재해부상군경 또는 그 유족 및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에 대한 지원의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 예고(2021. 12. 00. ~ 12.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호 중 “166만2천원”을 “174만5천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15만원”을 “120만7천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70만원”을 “73만5천원”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 및 수당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 별표 2,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보상금 및 수당부터 적용한다.

보상금 지급 구분표(제10조 관련)

1. 재해부상군경

상이등급별	월 지급액(천원)	상이등급별	월 지급액(천원)
1급 1항	2,327	5급	1,214
1급 2항	2,194	6급 1항	1,107
1급 3항	2,100	6급 2항	1,019
2급	1,867	6급 3항	684
3급	1,746	7급	365
4급	1,465		

2. 재해사망군경의 유족과 재해부상군경 중 상이등급 6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구분	월 지급액(천원)
가. 재해사망군경의 유족	
1) 배우자	1,226
2) 미성년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1,421
3) 부모 또는 조부모	1,204
나. 재해부상군경 중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1) 배우자	1,063
2) 미성년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1,234
3) 부모 또는 조부모	1,046
다. 재해부상군경 중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1) 배우자	390
2) 미성년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563
3) 부모 또는 조부모	370

비고: 사망자가 2명 이상인 유족에 대해서는 사망자 1명당 보상금 지급 구분에 해당하는 월 지급액을 각각 합산하여 지급한다.

간호수당 지급 구분표(제20조 관련)

구분	지급기준	월 지급액 (천원)
1. 상시 간호수당	가. 상이등급 1급 1항에 해당하는 사람 나. 상이등급 1급 2항 4116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 상이등급 1급 3항 4202호 및 510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 중 어느 하나의 부위에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고, 다른 부위에 5급 이상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2,763
2. 수시 간호수당	가. 상이등급 2급 4108호, 4203호 및 5103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상시 지급 대상이 아닌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9호에 따른 2개 이상 상이처의 상이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1급이 되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상이등급 2급 또는 상이등급 3급부터 5급까지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1,843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중상이부가수당) ① (생략)	제22조(중상이부가수당)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9조에 따른 중상이부가수당의 월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② ----- ----- -----.
1. 상이등급 1급 1항에 해당하는 사람: <u>166만2천원</u>	1. ----- ----- <u>174만5천원</u>
2. 상이등급 1급 2항에 해당하는 사람: <u>115만원</u>	2. ----- ----- <u>120만7천원</u>
3. 상이등급 1급 3항에 해당하는 사람: <u>70만원</u>	3. ----- ----- <u>73만5천원</u>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5420